

## 8. 公共用紙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施行規則中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21호 1997. 10. 15

###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주택의 평가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보상하던 보상의 하한가액을 300만원으로 늘려 영세민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이고, 실농보상을 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시행지구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하되, 손실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작물의 표준소득이 전국 평균 농작물수입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 지구로 공고 또는 고시되기 전 3년간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실농보상액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5조의 9 본문중 “1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중 “내구연한·수리세징수상황”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

1항 내지 제5항 및 제10항의 산출기준에 의하되,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를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24조제3항 산식중 “제조부문 보통인부 정부노임단가”를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운구차량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 라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영농보상)”을 “(실농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로 하며, 동항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3

2.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소득×3

3. 다년 1기작 작물의 경우

영농손실액=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소득÷1기작 재배에 소요

되는 기간(연단위)×2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다음 각호의 우선순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 단위면적당 소득이 농림부장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전국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되기 전 3년간의 실제소득을 평가하여 그 평가한 실제 소득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을 산출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

2. 제1호의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도별 또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중 유사한 작목류의 표준소득에 의하되, 유사한 작목류의 표준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작목의 조수입(수량×농가수취가격)에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

득 전체소득을 적용한 소득  
제30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  
부장관”으로, “농림수산통계연보”를 “농  
림통계연보”로 한다.

별표 2 비교란 제1호중 “정부노임단가 공  
사부문 남자 보통인부임”을 “통계법 제3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주거용건물 등에 대한 보상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9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보상이 진행중에 있  
는 사업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보  
상을 받은 자가 제5조의 9의 개정규정  
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실농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제5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거나 보상계획을 통지한 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정다목적담  
법에 의한 댐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5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공고한 사업분부  
터 적용한다.